

서울고등법원 2024. 7. 18 선고 2023나205174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서울고등법원 2024. 7. 18 선고 2023나2051749 판결

서울서부지방법원 2023. 10. 19 선고 2022가합30808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대한민국

피고, 항소인 A

변론종결 2024. 5. 23.

판결선고 2024. 7. 18.

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. 10. 19. 선고 2022가합30808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각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202,000,00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.

○ 제1심 판결 4쪽 12행 중 “대여금 채권이 있었다.”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.

(피고는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준비서면에서는 2020. 7. 14. 4,000,000원, 2020. 7. 29. 5,000,000원, 2020. 9. 24. 5,000,000원, 합계 14,000,000원을 송금하였다면서, 이 역시 B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.)

○ 제1심 판결 13쪽 2행 중 “226,632,040원(= 495,600,000원 - 268,967,960원)” 아래와 같이 고친다.

226,632,040원[= 495,600,000원 - 268,967,960원, 피고가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20. 7. 14. 이후에 14,000,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212,632,040원(= 495,600,000원 - 268,967,960원 - 14,000,000원)]

3. 결론

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심판대상에서 제외된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목록 4항

기재 증여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원범, 판사 이희준, 판사 김광남

별지